

의안번호	2208654
의 퇴 인	전종덕의원
회 답 일	2025.05.02.
추 계 번호	25C14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8인 확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800만원씩 향후 5년간 총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18	18	18	18	18	90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	의무규정

[표 2]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수와 구성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위원 수	16인 이상 22인 이하	(확대) 22인 이상 30인 이하
위원 구성	1. 근로자단체, 사용자 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좌동 (추가) 4.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신규 장기요양위원은 2026년 1월에 일괄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현행 16인 이상 22인 이하에서 22인 이상 30인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증가하는 회의수당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장기요양위원회는 당연직 4인, 민간위원 18인으로 구성된 총 22인이며 2024년에 본회의 4번 실무위원회 5번을 개최하였음
 - 개정안에서 위원 정수를 22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인 민간위원을 8인을 추가로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확대되는 인원은 본회의를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함
 - 실무위원회의 경우 확대되는 인원의 2/3에 해당하는 5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¹⁾

1) 2024년 기준 실무위원회에는 위촉위원 18인 중 12인(2/3)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추가되는 인원 8인 중 5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

- 위원회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본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 횟수와 참여 횟수가 변경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변경될 회의 횟수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2024년 기준을 적용함
- 회의 수당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을 고려하여 (대면)회의시 25만원을 지급하고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18	18	18	18	18	90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

2)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자료 인쇄비, 참석 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대면회의 1회에 25만원으로 가정(서면회의의 경우 15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